

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. 2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. 23

(제109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

나. 폐지사유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하였으나,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폐지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소득공제 및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와 다양한 상품권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내고장 상품권의 경쟁력이 상실
- 내고장 상품권 운영 업무가 행정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낮음
- 2002. 7월 감사원 감사시 권고사항으로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폐지하게 되어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폐지 조례안은 200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, 화순군 관내 상품권 취급입자에게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바, 지역경제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나, 당초부터 주된 구매자인 화순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반강제적인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만 요인으로 심화되었다고 판단됨.
- 동 조례의 제정에서부터 폐지에까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나 상품권 구매자들의 불만에 미치는 비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안할

때 폐지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결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선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